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9. 05. 22

**행 정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승 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마포구청장
- 나. 제 출 일 : 2009. 05. 07
- 다. 위원회회부 : 2009. 05. 08
- 라. 위원회 회부근거 :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

2. 개정이유

우리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을 통하여 승용차요일제 참여의 향상, 재래시장의 활성화, 공직선거 선거인 투표참여의 촉진 및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 경감규정을 신설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비고 내용을 조정
내지 신설
 - 1) [별표1] 비고제15호를 제14호로 하고 할인율을 상향
(승용차 요일제 차량 할인율 20% ⇒ 30%)
 - 2) 재래시장 인근 100m 이내 공영주차장은 시장 상인 및 이용고객에게 해당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별표1] 비고 제15호)
 - 3) 공직선거를 마친 선거인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별표1] 비고 제16호)
 - 4) 다동이 행복카드를 제출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별표1] 비고 제17호)
 - 5)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별표1] 비고 제18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
- 1) 개정문안 : 불임
 -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9.03.26 ~ 09.04. 15) 결과, 의견제출 없음

라. 참고자료

2009년 1/4분기 공영주차장 감면현황

(단위:대수, 천원)

구 분	주 차 내 역		감 면 내 역		비 고
	이용차량수	주차금액	감면차량수	할인금액	
계	141,140	456,709	13,268	31,598	평균 7% 할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4,777	15,562	80/100 할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7,438	12,341	50/100 할인
모범납세자			-	-	1년간 면제
승용차요일제 참여			1,053	3,695	20/100 할인 -개정추진

신규 감면대상현황

구 分	대 상	비 고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세대	519세대	09. 4. 30 현재
5·18 민주유공자	28명	09. 4. 30 현재

5. 검토결과

○ 제출경위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등을 통하여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제고, 재래시장의 활성화, 공직선거 투표율 향상을 위한 투표참여의 촉진 및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는 등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 경감 규정을 마련하여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의안임.

○ 주요내용

- 안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비고 내용을 조정 내지 신설하려는 것으로
- 제15호를 제14호로 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의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
- 제15호에 재래시장 인근 100m 이내 공영주차장은 시장 상인 및 이용고객에게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제16호에서는 공직선거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3개월 내에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제17호에서는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 (단,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주차 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제18호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 50%를 경감해 주도록 규정을 신설

○ 조례안 검토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 제고, 재래시장의 활성화, 공직선거 투표율 향상 및 출산장려 정책 등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경감해 주려고 하는 내용으로,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타당한 입법이라 사료되나, 감면대상 및 감면 폭의 증가로 인한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체납관리 및 주차장 시설의 확대 등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우리구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세대는 519세대이고, 5·18 민주유공자는 28명이며, 2009년도 1/4분기 승용차요일제 참여로 인한 주차요금 할인차량은 1,053대에 할인요금은 369만 5천원이었음,

1/4분기 공영주차장 이용은 141,140대로 주차요금은 4억 5,670만 9천원이었으며, 이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본 조례에 의한 할인은 13,268대 3,159만 8천원으로 전체 주차요금의 약 7%였음

※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 분의 80을 할인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2.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하여 설치된 전용 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4. 1급지를 제외한 요금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5. 모범납세자로 표장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 시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려하지 아니하다.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 ②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 ③ 20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및 시장 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자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④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의원의 선출] ① 교육의원은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 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교육감의 선출] ①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 제 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 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